

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 목 사회복지법인 '베데스다' 정관변경 인가 처리

1. 노원구 장애인지원과-8283(2012. 5.29)호와 관련입니다.
2. 사회복지법인 「베데스다」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, 따로붙임 정관변경 허가서의 내용과 같이 정관 변경 인가처리를 하고자 합니다.

- 가. 법 인 명 : 사회복지법인 「베데스다」
- 나. 대 표 자 : 양 동 춘
- 다. 소 재 지 :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5-37
- 라. 정관변경 인가내용

변 경 전	변 경 후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5-37번지에 둔다.	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5-37번지에 둔다.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(지부)를 둔다 1. 인천베데스다 : 인천광역시 부평구 _____ _____

- 붙임 1.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.
2. 정관변경 허가서(안) 1부. 끝.

주무관

장애인정책팀장

장애인복지과장

협조자

시행 장애인복지과-12245 (2012.6.13) 접수 ()

우 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소문별관 2동 1층 / http://disability.seoul.go.kr/
전화 3707-8481 /전송 3707-8368 / hj0327@seoul.go.kr / 비공개(6,7)

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검토보고

□ 법인개요

- 법 인 명 : 사회복지법인 『베데스다』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65-37
- 대 표 자 : 양 동 춘

□ 변경인가신청내용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5-37번지에 둔다.	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5-37번지에 둔다.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(지부)를 둔다 1. 인천베데스다 : 인천광역시 부평구 _____ _____

□ 검토내용

검토사항	검토결과	관련법규
정관변경신청서의 적정성	_____	○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
이사회 의결 및 회의록작성의 적정성	_____ _____	
정관변경안 구비여부	_____	
사업계획서, 예산서 및 재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여부 및 적정성	_____ _____ _____	
정관변경의 적정성	_____ _____	

□ 검토의견

- 법인의 정관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의 제2항에 법인산하에 분사무소 설치(인천베데스다)를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_____

_____정관 변경을 인가

하고자함.

2012. 6.

검토보고자 지방행정주사 이 혁 수

정관 변경 인가서

- 법인명 : 사회복지법인 『베데스다복지재단』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65-37
- 대표자 : 양 동 춘

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『베데스다복지재단』의 정관변경을 아래와 같이 인가합니다.

2012. 6. .

서울특별시장

가. 정관변경인가 내용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5-37번지에 둔다.	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5-37번지에 둔다.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(지부)를 둔다 1. 인천베데스다 : 인천광역시 부평구 _____ _____